



삼양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표준 편람

목 차

제 1 장 삼양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3
1. 의의.....	4
2. CP 필요성.....	4
3. CP의 8대 구성요소.....	5
제 2 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안내	7
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8
2. 합의추정제도	9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10
4. 정보 교환 행위	12
5. 입찰 담합.....	17
6.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시 제재	23
7. 경쟁사 모임 시 관련 행동지침	24
8.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24
9.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25
10.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25
제 3 장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27
1. 부당한 내부 거래 개요	28
2.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30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36
4. 업무시 유의사항	43
제 4 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5
1. 하도급법 개요	46
2. 거래단계별 하도급법상 주요 규제 내용	50
3. 제재기준	83
4. 행동지침 CHECK LIST.....	86

제 1 장 삼양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P)

1. 의의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당사가 도입, 시행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 안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기타 소관 법률**
 - 하도급거래/가맹사업거래/대규모유통업/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CP의 필요성

2.1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 기업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2.2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회사는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회사의 CP활동은 임직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경감, 회사의 사회적 이미지 실추 최소화 등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3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3. CP의 8대 구성요소

3.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당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과 절차는 당사의 문서정책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3.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임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여야 한다.

3.3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임명)

-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CP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3.4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5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 임직원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6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 감시 체계 구축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범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이다. 따라서 감사(Audit), 감독(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 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운용해야 한다.

3.7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

- 내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를 경쟁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3.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당사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용어 정의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대리점법」이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공정거래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한다.

제 2 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안내

I. 부당공동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1.1. 의의

- 둘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이라고 한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입찰담합)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정보교환 합의)

1.2 규제 현황

-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접 유발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근절에 공정거래 관련법규 집행의 제1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1.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1.3.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포함된다.
- “Knowing wink can mean more than words”(이해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음)
- 특히, 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된다.

[연락의 입증방법]

우선, ‘의사의 연락’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사업자의 종업원 등이 카르텔 입찰 담합을 행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진술 조서 외에, 카르텔 입찰 담합의 참가자 간에 작성된 협정서 및 회합 회의록 등이 있다.

1.3.2 ‘경쟁제한성’이 존재

-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 사업자간 합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
- 가격담합, 입찰담합은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추가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분석없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2. 합의추정제도

-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카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 합의추정을 적용한 사건도 이후 자진신고, 재조사 과정 등을 통해 실제 합의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행위가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소멸시킬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3.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가격 담합')

3.1.1 판단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3.1.2 법 위반 유형

-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과당경쟁금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행위

3.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2.1 판단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3.2.2 법 위반 유형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할 것을 합의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3.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3.3.1 판단기준

-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3.2 법 위반 유형

-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하는 행위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하고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4. 정보 교환 행위

- 정보교환 합의는 크게 “시장”에 관한 정보와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 합의가 있는 경우 성립하며, 의사의 합치는 묵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경쟁상 민감한 정보(이를 “경쟁의 요소”라고 함)란 가격정보, 향후 생산계획 등을 말하며, 이에 관해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연락만 있어도 ‘정보교환 합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1 개념

-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공동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음.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
Ex) 경쟁사업자 간에 시기적으로 임박한 상세한 가격인상 계획을 교환하고 실제로 그 교환된 정보에 부합하는 가격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 또한 유통업자, 사업자단체, 시장조사기관, 언론 등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교환도 문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유형]

- 원가
-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 기업이 타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해 자사의 경영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활동으로서 자연스러운 행위이지만, 이른바 **기밀정보 또는 민감정보(가격, 생산량, 비용 등)**의 수집 및 교환(이하 ‘정보교환’이라고 함)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양태에 따라 경쟁법 위반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 ‘정보교환’ 행위는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정보를 일간지 등 불특정다수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행위는 위법한 정보교환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개·공표 전에 은밀한 정보교환이 선행된 경우에는 법위반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공개된 공유정보라고 해도 해당 정보교환에 의해 해당 정보를 입수하기 쉬워졌는지 여부, 다른 공유정보가 아닌 정보와 조합했는지 여부의 사항의 평가에 따라서는 공유정보라도 기밀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는 역사적 정보, **최근의 정보 및 장래의 정보**로 구분하는데 역사적 정보를 제외하고 **1년 미만의 현재의 정보나 장래의 정보**, 특히 **기밀 정보**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을 경우, 경쟁 타사가 해당 시장에서 채택할 시장 전략의 예측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4.2 요건

(1) “정보”의 의미

- 정보의 의미'를 살펴보면 좁게는 담합을 촉진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로서 가격인상계획안, 인상내역, 월별매출목표, 매출실적, 목표달성도, 판촉내용, 영업전략 정보 등이 해당되며, 넓게는 기업의 기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원가 등 가격정보, 생산량 등 생산 능력, 거래조건 등을 말한다.
- 판례는 '정보'의 의미를 담합을 촉진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를 말하며, 예시로 라면 회사들의 가격인상 계획 및 인상 내역, 유제품 사업자들의 시유 및 발효유 제품별 가격 인상안, 음료회사들의 월별매출목표, 매출실적, 목표달성도, 판촉내용, 신제품의 가격, 영업전략정보, 가격인상안을 들고 있다.
-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원가 등 가격정보, 생산량 등 생산능력, 거래조건 등을 정보의 예시로 들고 있다.

(2) 교환(주고받음으로써)

-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그 합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40조 제5항 제2호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을 근거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한다(기업이 제3자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제3자 기관은 정보를 집약하고 축적하여 기업에 사전에 합의한 형식과 빈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 구성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에게 재고량, 판매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단체가 각 구성사업자별 재고량, 판매량을 문서로 정리하여 전체 사업자들에게 송부한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봄
 -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의 정보가 중간 매개자를 거쳐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 다수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일간지, 전문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표 또는 공개하는 것
- 주의할 것은 사업자간 비공개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한 후 그 정보를 사후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였다고 하여 선행된 비공개적인 정보교환행위까지 규율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3)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보교환의 합의

-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며,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간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한다.
- 단순 외형 일치(정보교환의 존재)를 즉시 합의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1) 의사연결의 상호성, 2) 정보교환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가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판례). 다만 정보교환 자체를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논란이 있으며, 법원이 '민감한 정보의 교환을 정보교환 담합 합의 추정'과 같은 사실상의 추정 등을 인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보교환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경우]

- 경쟁사가 보내온 가격 정보 관련 메일을 수신하자마자 더 이상 관련 메일을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실제로도 이후 그러한 메일이 오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단체의 판매량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타 구성 사업자에게는 공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 제공에 응하였으나 사업자단체가 해당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판매량 정보를 타 구성 사업자들에게 공유하는 한편 타 사업자들의 정보를 임의로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한 경우

4.3 정보교환을 근거로 합의 추정

(1) 합의추정의 의미와 요건

- 정보교환을 이유로 가격담합 등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 2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가격 등이 유사 또는 동일해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야 하고, ②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제2호).
- '합의추정'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사업자는 외형상 일치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설령 외형상 일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일치와 교환된 정보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즉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합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사례]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다른 업체의 가격인상 등을 단순 추정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2) 외형상 일치 판단기준

-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외형상 일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구매대체의 정도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외형상 일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예 :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 있다고 본다.

[외형상 일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시]

-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 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10개 보손해보험사들이 종래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비상급유 서비스를 4개월에 걸쳐 배터리 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

(3) 필요한 정보의 교환여부 판단기준

- 교환된 정보가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인지 여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정보의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반면, 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 경쟁에 큰 경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② 정보가 교환된 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해당 정보의 교환은 '필요한 정보'의 교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 ③ 외형상 일치와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필요한 정보교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재고·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이 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필요한 정보교환으로 볼 수 없는 사례]

- 경쟁변수가 아닌 일상적 정보(인사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 자료, 최신 상품 트렌드 분석자료 등), 단순 경영목표치(목표 성장률, 목표 매출액 등)의 교환이 이뤄진 경우
- 외형일치가 나타난 경쟁변수와 교환된 경쟁변수 정보간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예를 들어, 가격의 외형상 일치가 있었는데, 실제로 교환된 정보는 대금지급 정보인 경우)

(4) 업무상 유의사항

[Do's]

- 경쟁사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생산량, 마케팅 전략 등이 언급되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기록해 놓아야 함).
- 내부보고 생성시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이나 문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팀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한다.
- 경쟁사 임직원과 불가피하게 접촉한 경우 접촉경위나 모임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가격이나 공급량의 결정이 독자적인 분석과 이에 기초한 경영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분석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내부자료를 축적 보관하여야 한다.

[Don'ts]

-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는 경쟁사와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가격, 판매조건, 이익률, 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구역 뿐만 아니라 매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이 모두 경쟁핵심 요소에 포함).

- 전자우편, 즉 이메일의 쌍방향적 성격을 감안하여 경쟁사 임직원과는 가급적 이메일을 교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교환하여야 한다면 내용에 민감한 문구나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5. 입찰 담합

5.1 개념

-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 시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입찰 담합은 공공 및 민수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가 사전에 수주 예정자나 최저 입찰 가격 등을 결정함으로써, 발주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거래에 관계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입찰 제도의 실질을 잃게 하는 것과 동시에,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5.2 입찰담합의 방법

-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해 수주 예정자를 결정
- 점수제나 순서제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
- 지명업자 간의 화합의 모임을 통해 지명업자로부터 수주 희망의 유무를 듣고 토론 등으로 원만하게 낙찰예정자로 결정
- 발주처 직원으로부터 낙찰예정자가 된 취지의 연락을 받은 업자를 낙찰예정자로 확정.
-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견적을 작성하여 들러리사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하여 투찰

5.3 입찰담합의 유형

- 아래 유형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입찰 담합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 뿐 입찰담합이 우려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다.

(1) 입찰가격담합

-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된다.

- 가격은 본래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결정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입찰가격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인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 타당한 가격 수준을 위한 것이라든지, 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부당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1)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

- 사업자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낙찰가격 또는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것

2) 가구제조업분야의 입찰가격 담합 사례

- (입찰가격 등 합의) 명시적인 낙찰예정자 결정 없이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게 고가투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에게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

(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수주자 선정에 관한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인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1)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 관련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을 결정하는 것.

(a)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며, 수주 예정자에 관한 암묵적인 이해 및 공통의 의사의 형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위반의 우려가 강함.

㉠ 수주 의욕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주 의욕, 사업활동 실적, 대상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 예정자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사업자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

㉠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 사업자가 공동으로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 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

(b)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방법의 결정

- 수주 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 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는 것

(c) 기타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방법의 결정을 전제로 하여 그 결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인바,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반이다.

㉡ 다른 입찰참가자에 대한 이익공여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 예정자에게 다른 입찰 참가자들에게 업무발주, 금전지급 등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시키는 것.
-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는 제조위탁에 대해서,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는 동시에, 수주 예정자의 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제조위탁을 받은받은 자가 수주를 희망하고 있었던 수주 예정자 이외의 사업자 또는 일정 기간 수주의 실적 없는 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의 일부를 제조시키고 있었던 경우
- 지명경쟁입찰 또는 지명견적으로 발주하는 제조위탁에 대해서, 수주 예정자 및 수주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해당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자 이익을 거의 균등화시키기 위해서, 수주 예정자가 수주 예정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배분 방법 및 배분액수를 결정하고 있었던 경우

㉢ 수주 예정자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 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급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2) 위반이 될 우려가 있는 것

- 입찰 참여 사업자간에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기업체(컨소시엄)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기업체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체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정보를 교환을 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정보교환은, 수주 예정자 결정을 위한 정보교환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수주 예정자의 결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됨.

3)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것

- 발주자에 대한 입찰참가 의욕 등의 설명
사업자가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 이전의 단계에서 제도상 정해진 발주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체와 연락·조정 등이 없이, 자기의 입찰 참가에의 의욕, 기술 정보(유사 업무의 실적, 기술자의 내용, 해당발주 업무의 수행 계획 등)등을 발주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함.
- 자기 판단에 의한 입찰 사퇴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연락·조정 등을 하거나 그것들로부터 요청 등을 받을 일 없이 자기의 사업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입찰을 사퇴하는 것을 말함.

4) 가구제조업분야의 낙찰예정자 담합 사례

-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先)영업 업체 우대(예: 견본주택 건립업체) 등 건설사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

(3)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4)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주 수량, 비율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인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경영간섭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된다.

(6) 정보교환 등

- 정보교환행위란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 간에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빌트인 특판가구 공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에게 자사의 준 투찰가격과 세부원가 등을 제공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인

5.4 입찰담합시 제재

(1) 시정조치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2조).
-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 협정을 파기한 사실의 주지철저, 앞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범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말함.

(2)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43조).
- 입찰담합에 있어 관련매출액은 ①낙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②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③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금액(또는 응찰금액)

(3)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입찰담합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공정거래법 제124조,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개인에 대하여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 기타 형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에 의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4) 손해배상청구(징벌적 손해배상)

- 발주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5)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 입찰참여시 입찰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일정 %를 배상하도록 청렴계약서 등에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정위는 손해배상액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손해액 배상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6.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시 제재

6.1 행정적 제재

-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련매출액(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봄)의 20%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과징금 **40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6.2 형사적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 양벌규정(공정거래법 제7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가능하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6.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입은 제3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6조).

[손해배상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 (공정거래법 제111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4항)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5항)

[업무시 유의사항]

제출대상이 '문서'에서 '자료'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자가 전자문서, 동영상, 사진, 도면 기타 전자적 형태의 자료도 확보할 수 있게 됨 → 기업 입장에서는 서버 등에 저장된 다양한 자료(영업비밀 포함)의 유출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있음.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피해자의 증거수집이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고, 종전보다 손해배상액도 확대될 가능성 있음

7. 경쟁사 모임 시 관련 행동지침

- 경쟁사 임원과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제의 또는 수락하지 말고,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 특히 “업계 담당자간의 모임” 등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논의될 수 있는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은 절대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든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 사전에 신고하고 업계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를 준수하여야 한다.
- 업계 공식모임의 경우 사전에 회의 안건을 받아보고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참석하도록 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협회 등 업계간 또는 경쟁사와의 공식적인 모임, 우연하거나 비공식적인 만남 포함)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i) 이의를 제기하고, (ii)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자리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공식적인 모임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리를 떠난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회사 내부 기록에 남겨 놓아야 한다.
- 경쟁사와의 논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법무담당부서와 사전에 상의하고, 정확한 내용을 사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팩스, 이메일은 물론 전화통화 등 일체의 수단이

포함되며,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받는 행위도 포함).

- 경쟁사에게 향후 제품개발, 생산량 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 경쟁사로부터 가격, 거래조건 등의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사자료나 거래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한 경우 그 입수경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 경쟁사 관련 정보를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경우에도 이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시장 상황, 고객 수요 및 비용 등 다양한 경쟁적 소요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9.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하고 상품 관련 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시기 또는 내용으로 상품 내용으로 상품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문서 작성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회사의 중요정보는 주관부서에서 자체 관리 및 정보보안을 철저히 하고 담당자 외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를 회의 등의 사유로 배포 시회의 종료 후 필히 회수하고 메일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10.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은 그 형태와 구체적 논의내용,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사실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 추정 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모든 임직원은 명심하여야 한다.
- 업계모임이 공정거래법규를 위배하거나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한다.
- 판매, 공급 등 모든 가격, 거래조건 등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는다.
- 담합은 합의 사항의 실행 없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협의나 결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다. 법 위반가능성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율준수전담부서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여도 해당 행위가 참가로 간주되므로 반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기 요구), 즉시 그 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거부 의사를 명확히 알린다.
- 업계모임에서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의견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정보보고, 활동보고 등의 형식을 빌어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면 담합으로 오인되거나 담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허위의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업계모임 참여자는 사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서 검토 및 참여자 면담을 거친 후 참여 승인 또는 금지를 하거나 필요 시 모임내용을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업계모임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그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조항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담당자는 매월 해당부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시 참석한 업계 모임에 대한 활동내역을 포함시켜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내부거래 시 유의사항

1. 부당한 내부 거래 개요

-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종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인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통행세 관행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 내부거래 및 거래가 없는 사업기회 유용 등의 규제 필요성, 실제 지원을 본 지원객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의해 공정거래법 개정(2013. 8. 13.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 2014. 2. 14. 시행)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당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제47조)가 동시에 적용된다.

[부당지원행위 vs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비교표]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규제목적	공정거래저해성(특히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조항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거래법 제47조
지원주체	모든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지원객체	① 특수관계인 ② 계열회사(공정위 실무상 해외 계열사는 제외) ③ 자회사(지분을 100%의 완전자회사도 포함, 변화가능성 있음)	① 특수관계인 ②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상장여부와 무관)을 보유한 계열회사 ③ 특수관계인이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
구성 요건	지원행위+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부당성에 대한 안전지대 규정 존재)	행위당사자+부당이익제공
규제내용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통행세(불필요한 거래단계의 추가)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안전지대 규정 존재)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사업포기의 경우 규제 어려움 ③ 물량(일감) 몰아주기: 상당한 규모의 거래+정상가격에 비해 유리한 조건 ->예외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②통행세(불필요한 거래단계 추가) ③ 사업기회의 제공 ->사업포기도 규제 가능 ④ 물량(일감) 몰아주기: 상당한 규모의 거래+정당한 거래절차 부재(안전지대 규정)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입증 곤란한 경우에도 규제 가능하며, 예외사유(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에 대한 명시적 규정 존재
위반시 제재	1) 지원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등 재발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 • 과징금 부과: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지원금액x부과기준율) 이내 또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 원 이내 과징금 부과 - 지원금액: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금액의 차액 - 부과기준율: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80%, 50%, 20% 부과기준율 적용 • <u>실행행위를 한 자, 지시한 자, 관여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u> 2) 지원객체 <p>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지원주체와 동일)</p> <p>②개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경우, 부당지원행위는 제외되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지원 객체는 형사적 제재 대상</p>	

2.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2.1 의의

2.1.1 개념

- 지원을 하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에 대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상당히 유리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특수관계인 등)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지원하는 회사와 지원을 받는 회사간의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 특수관계가 없는자간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추정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경우, 지원의도가 엇보이는 정황증거가 있거나 제3자간 거래라면 나타나지 않을 협상 또는 거래방식이 있을 경우 지원을 한 회사가 정상가격임을 소명해야 한다.
- ‘불필요한 거래단계 추가행위’의 경우, 지원하는 회사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하고 계열사는 일종의 수수료(일명 ‘통행세’)를 받는 경우인데, 지원을 받는 계열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직거래보다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거래인지 판단하게 된다.

2.1.2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 부당성: 공정한 거래 저해의 우려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경우
-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 **(안전지대)** 대규모로 거래하여 거래총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이더라도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Tip] 지원금액의 상당성(정상가격과 지원금액의 차이)의 판단기준

지원금액의 상당성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당해 거래의 정상가격과 지원금액(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의 차감함 금액, 만일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차이, (2) 지원금액의 정도를 고려

정상가격과의 차이,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달해야 상당성이 충족되는지는 일의적으로 제시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당해 거래에 관한 제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2009두11911)

법원 및 공정위는 정상가격 대비 유리한 조건의 상대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현저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10~20% 사이에는 유동적임, 유의할 것은 상대적 비율이 10% 미만인 사례에는 공정위가 개입하지 않았음

2.2 유형

2.2.1 자금지원행위

(1) 판단기준

-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정상금리는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하며,
- 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말한다.
- (안전지대) 적용금리와 정상금리 차이가 7% 미만이면서 해당연도 자금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유가증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상품·용역거래,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거래총액) 판단에도 이를 준용

(2) 위반 유형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2.2.2 자산(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지원행위

(1) 판단 기준

-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 거래시 비계열사와 거래시 정상가격(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의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차이를 7% 미만으로 조정

-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비계열사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함.
-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 정상가격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되, 정상가격(시가)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부당한 지원행위심사지침).
- (안전지대) 해당 거래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산거래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2) 위반 유형

- 비상장 주식을 저가 매도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수령을 지연한 경우
-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도록 한 경우

2.2.3 부동산 임차

(1) 판단 기준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 (안전지대) 실제 임대료·임차료와 정상 임대료·임차료의 차이가 정상 임대료·임차료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부동산 임대차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2) 범위반 유형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2.2.4 상품 및 용역 지원행위

(1) 상품, 용역거래의 경우,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어려우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안전지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거래된 상품·용역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2) 위반 유형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인수행위,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원재료의 고가매입
- 대금결제방식을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2.2.5 인력지원행위

(1) “정상급여”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매출규모에 따라 안분) 한다.
- (안전지대) 실제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상급여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2) 유형

- 업무지원을 위해 계열사 등에 인력을 제공한(파견 등) 후 파견인건비를 계열사에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2.2.6 물량 몰아주기

(1) 개념

-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판단 기준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정당화 사유 고려: 당해 거래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 (안전지대)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거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적용제외).

(3) 위반 유형

-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으로써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며,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2.2.7 통행세(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

(1) 개념

-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유형

-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전혀 혹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
-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만 그 대가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3.1 개요

(1)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총수 및 친족으로 한정), 동일이니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음)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와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공정거래법 제47조).
- 의결권 유무는 무관하며 직접지분만 계산한다. 특히 동법 제45조와 달리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지원주체·지원객체 판단은 해당 이익 제공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직접 지분만 포함하여 산정하며, 차명보유, 우회보유의 경우에도 직접 지분으로 본다.
-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가능하다.
- 지원주체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동일인 있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말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 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이 기업집단에 한정함)

-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 특수관계인은 동일인(총수) 및 그 친족(동일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말하며,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에 한정한다.

(2) 위법성 판단기준

- ‘부당한 이익’ 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2017두63993 판결 등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공정위 지침변경 중).

[부당한 이익제공 유형(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유형	내용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제1호, 제3호)	<p>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 인력거래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현금 기타 금융 상품 거래</p> <p>※ 적용 제외: ①실제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②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 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p>

	미만인 경우
사업기회 제공(제2호)	<p>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이익성)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밀접성)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행위</p> <p>※ 적용 제외: ①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사업기회 제공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③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p>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 규모의 거래(제4호)	<p>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거래 특성상 통상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p> <p>※ 적용 제외: ①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②거래상대방의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p> <p>③ 효율성이나, 긴급성, 보안성이 필요한 거래</p>

3.2 내용

3.2.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혈값제공 또는 고가매입)

(1) 대상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용 제외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연간 총거래금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법 위반 유형

-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로 지원을 하는 경우
- 출자행위 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통해 지원을 하는 경우

- 기업 어음 고가 매입
- 회사채 고가 매입
- 주식 고가 매입
-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의 고가 매입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 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3.2.2 사업기회의 제공

(1) 대상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 행위 유형은 외형적으로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될 수 있는 제공주체 측면의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업기회의 의미

- 제공주체 측면에서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익성)이 될 사업기회를 말하며, 제공주체 측면에서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이면 충분하고 제공객체에게 그 이익이 이전될 필요는 없다.
- 상법 제397조의2에 정한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에서 사용된 표현과 유사하지만, 동법에서는 위반한 이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규정이고 이사회 승인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이사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부당성 판단기준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 사업기회 제공 당시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영업권도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는 포함한다.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회
-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
- 수행할 사업
- 내부적 검토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한다.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인지, 전·후방으로 연관관계에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4) 적용제외

-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구체적으로 법률적 불능 또는 경제적 불능이 있는 경우를 의미)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당해 사업기회가 지니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판단)
-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사업기회의 가치와 사업기회를 수행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 사업기회 거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업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공주체가 해당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기업집단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었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위 면제 사유의 평가 기준이 되지 아니함

3.2.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1) 대상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총수일가)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회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될 수 있다.

(2) 적용 제외

- 거래당사자 간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된다.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를 말한다.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경쟁력이 부품이나 소재,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회사의 품질 혹은 경쟁력과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거래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 회사가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계열회사가 된 것이므로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거래 시 종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변경 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거나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공장·연구개발시설·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기술 및 정보가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보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상호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거래라 할 수 있다.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 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를 말한다.
- 긴급성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보안성 사유를 판단할 때보다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경기 급변이나 금융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정치·사회적 변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단순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단순히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공여

- 통상적이고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할 경우 정상가격 거래도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공정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 및 '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4) 합리적 고려·비교에 대한 세부기준 제시

- ①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 ② 주요 시장 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것
- ③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것
- ④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와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다만, 형식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 제외됨

4. 업무시 유의사항

4.1 계열사 선정시

- **계열회사와 비계열사와의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의 비교**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비교·검토
 -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무제표, 신용평가표, 업무실적, 가격비교자료 등)를 구비·보관
- **통행세 해당여부 검토(특히 계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주의)**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 관련 증빙자료 구비
 - 계열사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직거래시) 당사는 더 싸게 상품·용역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 확인
 - 계열사의 매개 전후의 거래관계 변동 확인
 - 비계열사에는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확인
- **안전지대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 가능성이 비교적 낮으나, 컴플라이언스팀의 사전 검토는 반드시 필요**

[Tip] 정상가격 산정시 유의사항

- '정상가격'이란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자 간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II.5.Ⅲ.2.}
- 해당거래와 동일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면 유사한 사례를 통해 정상가격 산정
 - 1) **해당거래와 유사한 사례 선정**

- 2) 유사 사례와 해당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차이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
- 3) 거래조건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 산정
 - 유사한 사례도 없다면 통상의 거래당사자가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경영 사정하에서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으로 산정하되, 다음 법령에서 고려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음(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 산정 방법을 걸친 것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 제1절(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
 -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정위에 있음(2014두36112판결), '정상가격'이 이러한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위에 있음.

4.2 가격 설정 시

- 비계열사와의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 비계열사와의 가격비교자료, 감정평가자료 등 정상가격에 관한 검토자료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
-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7% 미만인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3 기타 거래조건 설정 시

- 계약방식 및 내용에 대한 자체 검토 필요
- 회계법인, 감정평가 등 제3자를 통한 계약 조건 검토
- 거래조건을 비계열사와 거래 시 설정하는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거래조건 협상과 관련한 근거자료(회의록, 전자메일 등)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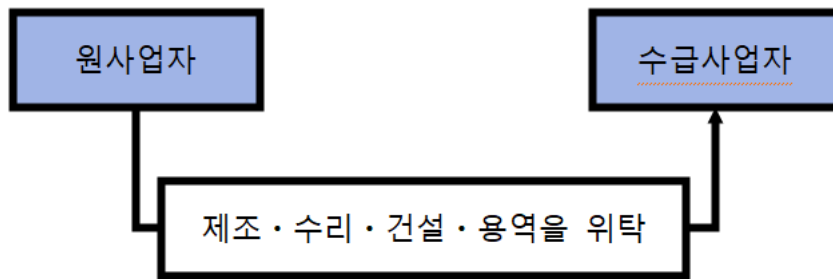
1. 하도급법 개요

1.1 하도급법의 목적 (법 제1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2 주요 개념 (법 제2조)

▣ 하도급 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함.



- 원사업자: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는 자를 말함
- 수급사업자: 위탁받은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수행하여 납품·인도·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함
- 발주자: 원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도급하는 자를 말함

*거래종류

▣ 제조위탁

•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또는 건설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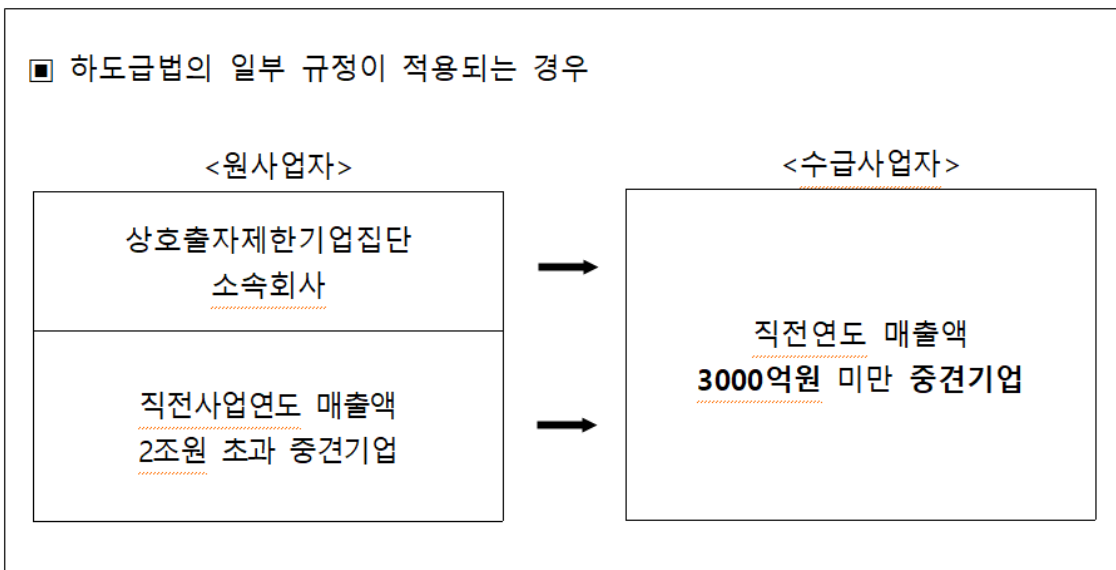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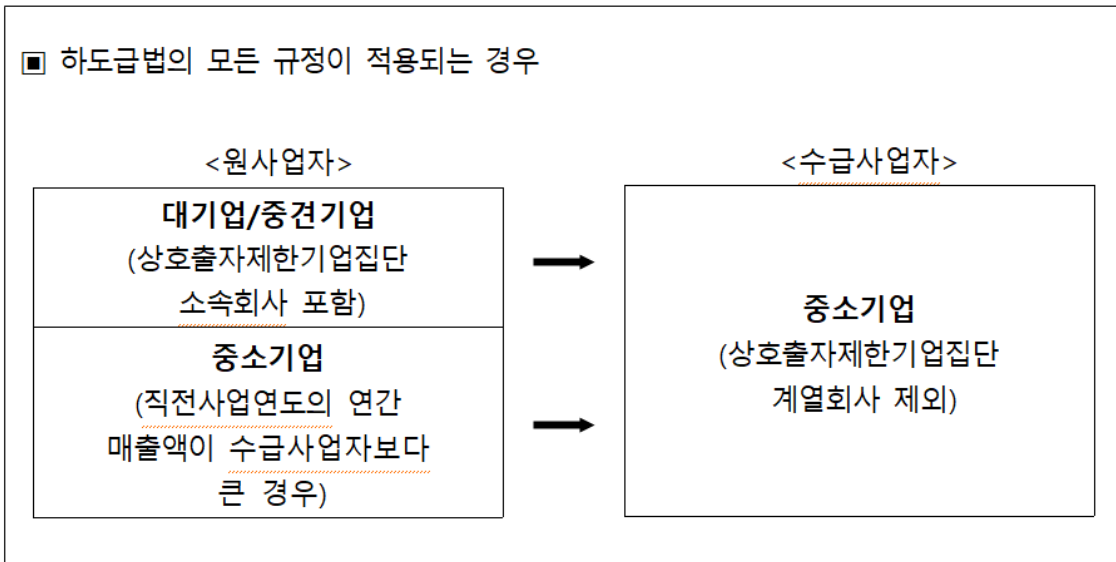
▣ 수리위탁

•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용역위탁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직무(役務)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1.3 적용 대상(법 제2조)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원칙)
- ①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의미함, 이하 동일)가 아닌 자(대기업,

중견기업)가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을 한 경우

②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가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더 적은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을 한 경우

• 다만, 위탁을 한 중소기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함

- ▶ 제조/수리위탁: 연간 매출액 30억 원 미만
- ▶ 건설위탁: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
- ▶ 용역위탁: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예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위탁을 한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위탁을 받은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음
-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2조 원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및 보복조치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로 간주됨

■ 적용대상 기간 및 처분시효

•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하도급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지 않음. 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되거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거래가 끝난 날이란 다음과 같음

→ 제조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 中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中 역무의 공급위탁: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 단,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

•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4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34조)

■ 하도급법 우선 적용(법 제34조)

•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름

■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관계

• 상생협력법은 하도급법과 규제 내용이 유사하나,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위탁 거래의 범위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보다 더 넓음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업에 따른 위탁일 것을 요구하나, 상생협력법은 원사업자의 업과 무관한 위탁이어도 적용됨

▶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작은 경우에도 적용됨

▶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2조 원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됨

2. 거래단계별 하도급법상 주요 규제 내용

2.1 하도급계약 체결 단계

2.1.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법 제3조)

■ 원사업자는 (i)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ii)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완료하여, (iii)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위탁 업무 착수 전) 발급하고, (iv)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3년/7년) 이상 보존해야 함

* (i)을 위반 시 불완전 서면교부, (ii)를 위반 시 서면 미교부, (iii)을 위반 시 서면 지연교부, (iv)를 위반 시 서면 보존의무 위반에 해당함

• 법정 서면기재 사항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사급자재가 있는 경우 그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협력사가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사전 협의하여 정한대로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함

• 2023. 10. 4.부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이 법정 서면기재 사항*에 추가되었으므로, 2023. 10. 4. 이후 신규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법정 서면기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하는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요 원재료의 유무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원재료가 존재한다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별도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함

① 하도급거래기간이 단기(90일)인 경우

② 하도급대금이 소액(1억원 이하)인 경우

③ 협력사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미연동하기로 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해야 함

■ 미연동계약서 관련 유의점

-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함
- 특히 입찰 등을 진행할 때,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입찰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는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계약 필요 서류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합의서를 일괄적으로 징구하여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경우 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연동제 관련 성실한 협의진행 절차 수립

- 실질적인 의견 교환 진행(회의록, 메일등 증빙자료 필요)
- 미연동조건을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후 협의하는 것은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미연동합의의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어야 함

■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됨

◆ 위반유형

<서면의 발급 및 서류 보존>

- 계약 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에도 별도 서면을 사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별도의 날인없이 개별 계약에 해당하는 발주서(PO)를 발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날인이 완료된 서면을 별도로 회신받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관련사례

1. 추가변경 위탁 시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1. 2. 8. 의결 제2021-037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사내협력사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음
- 피심인은 위 사례들이 수정·추가 공사로서 '단순한 작업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거나 사후 정산합의서로 같음할 수 있는 빈번하고 경미한 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음

■ 공정위 판단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상 사전서면교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은 서면교부의무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2. 별도의 날인이 없는 작업지시서(발주서; PO)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8. 의결 제2024-008호;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8. 의결 제2024-009호;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9. 의결 제2024-015호)

■ 사실관계

- 피심인들은 법정기재사항이 빠졌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를 통해 업무를 지시함

■ 공정위 판단

- 기본계약서에 법정사항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후에 발급하는 작업지시서에 위 사항들을 규정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함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법 제3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i)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ii) 하도급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iii)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iv)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 2023. 10. 4. 이후로 자동 갱신된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하도급연동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쫓개기 계약, 이면 계약 등)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제 적용 시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처럼 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등 원사업자가 계약체결 요건으로서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연동을 하기로 합의한 업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등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유도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년동안 1년 단위 자동 갱신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유지해왔거나 계약의 성질상 계속적 거래가 예상됨에도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래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년동안 수억 원의 하도급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견적서 등에 명시하는 행위

◆ 관련 사례

1.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공하지 않은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5.9.22.)

■ 사실관계

- S사 등은 주요 원재료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음

■ 공정위 판단

- 목적물 등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이 되므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함

2.1.2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 4)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안 됨

- 계약조건이란, 하도급계약서+ 설계도면 · 시방서 · 유의서 · 현장설명서 · 제안요청서

· 물량내역서 · 계약 및 견적 일반/특수 조건 · 과업내용서 · 특약조건 · 도급업무 내역서 · 견적서 · 약정서 · 협약서 · 합의서 · 각서등을 말함

■ 다음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가 됨에 유의

-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2025년 4월 1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 중 하나로 신설(2025.10.2. 시행)

· 기성금, 준공금 등에 대한 지급유예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사법상 효력이 없게 됨.

·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함은 ①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을 권리, ②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권리, ③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④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를 지급받을 권리, ⑤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 ⑥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을 권리 등을 말함

·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이라 함은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함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 · 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 · 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위반유형

<부당특약>

-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해당 공사의 준공 때까지 또는 준공 후 일정 기간까지 연기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보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나 기간이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유보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또는 하자보수보증 의무와 무관하게 기성금이나 준공금에 대한 정산 지연 시 공사대금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정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완료 후 반환하여야 함에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시기를 이와 무관한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 여부와 연계시키는 약정

- 「부당특약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사업자 의무 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를 수급사업자가 전보하도록 한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4. 4. 3. 의결 제2024-109호)

■ 사실관계

-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손해배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함

■ 공정위 판단

-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사업자에게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제62조, 제63조),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제64조)가 부과되므로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업무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책임 또한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2.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9. 14. 의결 제2023-139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인정해주지 않는 조건,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건, 표준 계약서상 선금금 효력을 부인하는 조건을 설정함

■ 공정위 판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을 수 있고,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원천차단한 조항은 부당함
- 기성금 일부를 하도급법상 대금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부당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도 선금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한 조항은 부당함

2.1.3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법 제4조 제2항)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됨

◆ 위반유형

<부당한 대금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1. 입찰을 실시하면서 구매목표 금액을 기존 단가 대비 일괄적으로 10% 인하한 행위를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0. 5. 11. 의결 제2020-106호;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 사실관계

- 피심인은 단가인하를 위해 사외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전 단가 대비 10% 인화된 금액으로 구매목표 금액을 제시하여 입찰을 실시함

■ 공정위, 법원 판단

- 구매목표금액은 사외협력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사외협력사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입찰통보 공문을 통해 10% 인화된 단가를 적용한 구매목표금액을 제시하였으며, 사외협력사들로서는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조조정 및 매출이 급감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 단가인하 참여로 보기는 어렵고, 부당한 대금 결정에 해당함

2.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13. 의결 제2023-227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는데, 829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입찰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가격인하 협상 등을 통해 낙찰자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
- 특히 위 하도급계약 중 317건의 경우 피심인이 설정한 기준금액 이하에서 최저가 입찰가격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 공정위 판단

- 구매팀 담당자는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원인이 '원가변동 리스크의 최소화가 필요했고, 낙찰자 제시금액이 자신들의 이익관점에서 비싸기 때문'이라고 진술함
- 이는 오로지 피심인의 내부사정(수익성 제고, 외주비 절감)에 불과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2.2 하도급계약 이행단계

2.2.1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법 제8조)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 원사업자는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위탁시점이란?

① [원칙]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시점

② [계속적 거래계약] 하도급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 내용을 기본 계약서에 담고, 납품 등의 수량·단가·시기·장소등 직접·구체적발주내용은 특약서/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발주하는 경우, 해당 특약서/발주서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말함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착공을 거부하여 납기내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 원사업자는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단,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조달 실패 등 자신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한 목적물의 품질·성능 등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물 생산, 운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목적물 등이 오손·훼손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납품을 받은 경우,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단,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 취소·변경 여부 판단 기준

- 위탁취소 사유가 계약서에 규정되고, 위탁취소가 계약서상 내용·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협의를 있었는지
- 위탁 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 취소하였는지

◆ 위반유형

<부당 위탁 취소>

-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사양변경·모델단종·생산계획 변경·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동의·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합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한 사유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들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1. 생산계획 변경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2. 9. 16. 의결 제2022-040호)

■ 사실관계

• 다른 부품 거래처의 납품 지연, 고객사의 사정 등으로 생산계획이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의 위탁을 취소함

■ 공정위 판단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판단함

▶ 위탁취소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안테나는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시 피심인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매출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이미 납품한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는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아래 피심인의 위탁취소 결정을 수용한 것이 아님

2. 작업공정 지연, 작업자 기량 미달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018. 1. 15. 의결 제2018-033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작업공정 지연, 작업자의 기량 미달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위탁을 취소함

■ 공정위 판단

• 계약서에 도면, 자재와 관련된 공정지연을 피심인의 귀책으로 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작업지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부당한 위탁취소로 판단함

◆ 위반유형

<부당수령거부>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단축을 통보하거나,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납기에 목적물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판매부진·생산계획 변경· 사양변경 등을 이유로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한 경우에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1. 공급예정일 내에 납품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15. 6. 1. 의결 제2015-086호)

■ 사실관계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심인 전동기 부품 N2760 1009 품목 7,000개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면서, 발주서에 기재된 공급예정일 내에 납품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수령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공정위 판단

• 당해 수급사업자와 거래한 전체 13개 품목 중 N2760 1009 품목을 제외하고는 신규로 발주할 때에 전월 미입고된 물량을 소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령거부행위는 그동안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거래한 방식 내지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임

• N2760 1009 품목에 대해서는 발주 4건 중 3건의 납품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짧게 정하였고, 납품지연 책임에 관한 약정이 사전에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수급사업자가 공급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를 이유로 피심인이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사례가 없음

2. 별개 품목의 하자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2. 3. 의결 제2022-075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제조 위탁(2018년 8월)한 마스크팩 실크 원단 300,000장의 수령을 거부함

■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은 2018년 6월 제조 위탁한 제품에 개미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별개의 품목인 2018년 8월 제조 위탁한 제품에 대해서 수령을 거부한 점, 2018년 6월 제조 위탁한 제품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개미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책임소재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점에서 부당한 수령거부로 판단함

2.2.2 검사 및 검사 결과 통지 의무(법 제9조)

■ 검사의 기준 및 방법

-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 검사결과 통지 의무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른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단,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한 사유

▸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

• 위 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됨.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위반유형

<검사결과 미통지>

-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해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경우
- 검사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 감액,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관련사례

1. 검사결과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4.7.11. 의결 제2024-259)

■ 사실관계

- OO무역은 2022. 1월부터 2022. 4월까지 기간 동안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하였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음

■ 공정위 판단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됨

* 입고 샘플에 대한 실측 사이즈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컨펌서만으로는 목적물의 불합격 여부, 불합격 판단기준, 불합격 수량,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함

2. 통지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합격이 간주되며 별도의 서면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두57893, 2022두57909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제조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함

■ 대법원 판결

• 원심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검사결과를 통지받지 않더라도 통지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합격된 상태가 되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을 취소함

•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추후 미통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로 불합격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위반이라고 판단함

2.2.3 부당한 반품 금지(법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안 됨 (단, ,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위반유형

<부당반품>

- 거래 상대방(고객사)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 발주자의 가공불량을 이유로 반품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16. 2. 2. 약식2016-014)

• 피심인이 발주자가 가공과정에서 발생시킨 불량(가공불량)을 이유로 반품한 행위를 부당반품으로 판단한 사례

2.2.4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법 제11조)

■ 부당감액 금지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 됨

•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반품을 하여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경우. 단,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리비용 산정기준이 필요하며, 감액은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 감액서면 교부의무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

- ▶ 감액사유와 기준
- ▶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 감액금액
- ▶ 공제 등 감액방법
-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위반유형

<부당대금감액>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낙찰 받은 차기 공사의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

◆ 관련사례

1. 물량증가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48443, 2021누58372 판결)

■ 사실관계

- 가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원고)가 발주물량의 증가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례
- 양당사자의 합의로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 이러한 물량 증가를 알았더라면 결정하였을 금액'을 고려하여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함

■ 법원 판단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 원고는 사전에 계약서등에 거래물량 증가를 사유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이나 감액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
- ▶ 원고는 각각의 감액 내역이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뒤에서 보듯이 일부 내역은 원고가 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 원고의 주장대로 거래물량 증가를 이유로 감액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증가된 거래물량의 구체적인 수치나 감액 액수에 관한 합리적인 추산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2. 인하된 단가의 적용일자를 합의일보다 이전으로 소급적용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누57485 판결)

■ 사실관계

- 휴대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원고)는 수급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의록, 가격 인하 협의록 등에 인하된 단가의 적용일자를 합의 일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명시함

■ 법원 판단

- 금지되는 단가 인하 합의의 소급적용은 원사업자가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소급적용에 관한 외형상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옳음
- 원고와 수급사업자들 사이에 사전에 단가 인하 합의일 이전으로 그 적용일을 소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부당감액에 해당함

3.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0누64561 판결)

■ 사실관계

- 자동차용 에어컨 및 엔진 냉각시스템을 제조하는 사업자(원고)가 자신의 기술지도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
- 원고는 자신의 기술지도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였고, 수급자들이 절감한 비용 중 원고가 기여한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 판단

-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한 감액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그러한 감액에 동의하였다거나 단순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원고에게 분배되는 금액(감액액)이 원고의 기여 정도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가 하려는 생산성 향상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와 그 이익액의 분배방법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실제로 원고의 기여 활동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2.2.5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금지(법 제12조의3)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됨
-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됨

■ 기술자료

- 비밀로 관리되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1)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 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

▸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 작업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 기술자료제공요구서 교부 의무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

- ▶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 비밀유지의무 또는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배상
 - ▶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 ▶ 관련 자료는 관련 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함

■ 기술자료 유용 금지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유출행위)하여서는 안 됨
- 유용행위는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 위반유형

<기술자료 제공요구>

◆ 관련사례

1. 품질육성 및 자산인수 목록 작성을 위해 기술자료를 직접 수령하거나 보유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2. 9. 16. 의결 제2022- 239호)

■ 사실관계

• 자동차 도어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피심인)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총 22건의 도면을 요구함

■ 공정위 판단

• 기술자료 제공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22건의 도면은 승인도 업체에게 업계 관행상 요구하지 않는 단품도면으로, 피심인은 도면수정 지원을 위해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령한 단품도면에 대한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품질육성을 위해 도면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요구도면을 요구하여 '보유'할 필요성은 없음

▶ 자산인수 목록 작성을 위해서는 도면 보유 여부만을 확인하면 될 뿐 그 실물을 직접 수령할 이유는 없었음

2. 납품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품질검증을 위해 도면을 요구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2. 3. 28. 의결 제2022-083호)

■ 사실관계

• 농업 및 수산업용 기계와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피심인)는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령함

■ 공정위 판단

• 기술자료 제공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요구하였다고 판단함

▶ 최초 납품한지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 품질 검증을 위해 금형 도면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품질 검증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요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전체 금형 도면을 요구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벗어남

◆ 위반유형

<기술자료 유용>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1. 하자 보완을 목적으로 제작도면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 사실관계

• 굴삭기 등 건설기계, 발전기용 디젤엔진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에어 컴프레서 공급처를 변경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 C로부터 받은 소형 에어 컴프레서 제작도면을 새로운 공급처인 E에 전달하여 E로하여금 미흡한 에어 컴프레서 제작 기술을 보완하게 함.

■ 법원 판단

• 원고가 하자 없는 소형 에어 컴프레서를 공급받기 위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C의 도면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함

▸ 원고는 C에게 제작도면 제공을 요구하면서, C의 제작도면이 경쟁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동일 소형 에어 컴프레서 제작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통지하지 아니함

▸ 품질목표 준수 협약 체결에 필요하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워 제작도면을 요구하였으나 협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된 쟁점은 에어 컴프레서 에어탱크 용접 하자 여부 점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었고, 당해 제작도면을 요구하였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 수급사업자 이원화를 목적으로 승인도를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 사실관계

• 건설기계와 산업차량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하네스 납품업체를 이원화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하네스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 M 및 N의 하네스 제작도면(승인도)을 CB에게 제공함

■ 법원 판단

• 도면 작성시기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2017. 11. 13. M과 N에게 이 사건 도면의 제공을 요구한 점에서 원고가 설계에 관한 승인 또는 이에 수반되는 업무상 목적으로 이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2.6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기획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일률적으로 물품 매입금액의 5.5%-9.9%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을 제공하도록 함

• 원사업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판촉행사비용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

◆ 위반유형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참조

◆ 관련사례

1.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가 판매하는 의류 구입을 요청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0.1.9. 의결 제2020-009 판결)

■ 사실관계

• 의류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들 96개 사업자들에게 의류 및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였는데, 원사업자가 해당 중소기업자들에게 원사업자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의류에 대하여 백화점 또는 직영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후, 그 구입내역을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보고하도록 함

■ 공정위 판단

• 원사업자는 비록 단순한 '요청'에 가까운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갑을관계 및 계속적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요구'에 가깝게 판단함

2.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누52596판결)

■ 사실관계

• 토목건축공사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계열회사들이 시행한 상가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함

■ 법원 판단

• 수급사업자들이 공사에 따른 이윤을 세금 정산 없이 가져가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수급사업자들이 이러한 이익을 얻고자 이 사건 상가 분양 내지 분양권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법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음

2.2.7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법 제18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안 됨

■ 다음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경영상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 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정당한 사유란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안 됨

◆ 위반유형

<부당한 경영간섭>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시하는 행위(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참조

◆ 관련사례

1.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운용하며 협력사의 임직원 선임 및 지분구성 등을 통제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1. 2. 8. 의결 제2021-037호)

■ 사실관계

- 협력사들의 임원 임기, 임원 처우,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적정 자본 규모, 지분구성 등 협력사 내부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경영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함
-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해당 자리에 부임할 내부 직원을 후임자로 선정하여 협력사에 통보하고, 후임자는 전임자가 보유한 협력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임자의 직책에 부임함
- 협력사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일부를 타 협력사가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분구조를 변경하도록 함

■ 법원 판단

- 협력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영사항에 관하여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이 사건 협력사들의 경영을 통제한 것으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함

2.3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2.3.1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법 제13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함

■ 예를 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7.5%)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이 만기인 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 위반유형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 추가 공사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경우
- 하도급대금에 관한 민사상 다툼이 있다는 사실(손해배상 채권 발생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시점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 이전의 하도급대금만을 지급하고 추가로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관련사례

1. 책임시공 약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추가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1. 2. 8. 의결 제2021-037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당초 설계보다 물량이 증가한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심인은 책임시공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함

■ 공정위, 법원 판단

- 민사법원 판결에 따라 책임시공 약정을 인정할 수 없음
- 수급사업자가 설계에도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시공 약정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음

2. 임의 산정된 손해배상액 채권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2. 4. 28. 의결 제2022-098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출하검사에서 스크래치 불량품을 발견하는 경우 리터치 작업을 진행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였는데, 발주자가 2018년 6월경부터 리터치 작업을 거쳐 납품한 제품의 수량을 거부하였음
- 이에 피심인은 발주자 반품 및 제품 하자가 수급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요구한 손해배상금의 절반가량)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 공정위 판단

- ① 하자가 신고인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귀책사유가 신고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수입검사를 통과한 이상 하도급대금 채무는 발생하는 점, ② 피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임의 산정된 것으로 법률상 확정된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하도급대금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민사상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에서 대금지급 지연을 금지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취지가 몰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2.3.2 선급금 지급 의무(법 제6조)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탁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 선급금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즉, (i) 발주자가 선급금 지급 대상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ii) 발주자가 대상 공사나 품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15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위반유형

<선급금>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 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관련사례

1.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0. 5. 7. 의결 (약) 제2020-031호)

■ 사실관계

• 중소기업인 피심인은 자신보다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이 적은 중소기업에 금속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선급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고,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함

2.3.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법 제16조) 및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법 제16조의2)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 원사업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안 됨

■ 연동제와 대금조정협의 의무와의 관계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상태여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였다면 원사업자는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 하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라면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라면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 하도급법 제16조에 의한 조정의무와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의한 조정의무를 비교하여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할 수 있음

◆ 위반유형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행위
- 협의를 개시하였으나 의사결정권이 없는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고의적으로 협의를 게을리하는 행위

◆ 관련사례

1.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를 제제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24. 1. 30. 의결 (약) 제2024-011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았으나, 수급사업자들에게 증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았음

■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됨

3. 제재기준

3.1 제재기준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	
과징금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 이내(법 제25조의3) 단,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불완전 서면 교부(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과징금부과 대상에서 제외	
손해배상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형사처벌	원사업자 의무사항·금지사항 위반 단,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불완전 서면 교부(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대금 2배 상당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 제1항)
	보복조치 금지	3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 제2항)
	시정명령 불이행·경영간섭·탈법행위 금지 위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 제2항)

3.2 FAQ

Q. 발주서(PO)에도 날인이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뒤, 세부 물량은 PO를 통해 발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본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법정 기재사항이 대부분 PO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PO가 계약으로 편입되어야 불완전 서면교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뒤, 서명·날인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하여 업무를 지시한 원사업자들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24. 1. 8. 의결 제2024-008호;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8. 의결 제2024-009호;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9. 의결 제2024-015호).

Q. 당사 날인 후 수급사업자에게 PO를 송부하면 충분한가요?

A. 실무상 원사업자의 날인이 완료된 PO를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당 PO에 수급사업자의 날인이 완료된 최종본을 별도로 회신받지 않는 경우, 서면 보존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최종본 회신을 요청하시고, 3년간 PO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체결 합의의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A. 미연동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i)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원사업자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음, (ii)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하도급대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iii) 다른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음(복수의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iv)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자회사 관계임, (v)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충분히 조정하고 있음 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또는 미연동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의 경과, 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실한 협의의무 준수 또는 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미연동 합의한 사유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따라서,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미연동 합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로부터 사유가 기재된 공문을 수령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Q.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해 유의해야 할 행위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나요?

A.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i)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연동에 관한 협의 미실시, 회의 개최나 의견 교환 등 실질적 협의 미실시, 권한 있는 책임자의 협의 불참), (ii) 탈법행위(대금이나 기간에 관한 쪼개기 계약 유도, 미연동합의 강요·유도)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Q. 부당특약의 효력 유무, 실제 비용 전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이 되나요?

A.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3.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상고기각 참조).

Q. 단가가 낮은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대상 거래의 시점, 방식, 규모, 기간과 비교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거래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Q.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이에 응하여야 하나요?

A. 법 제16조의2에 따른 성실한 협의 의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무관하게 부여된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전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또는 감액)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달리,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정신청은 기간 내에 성실히 협의에 응할 의무만 다하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행동지침 CHECK LIST

4.1 행동지침 CHECK LIST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법무부서의 검토가 완료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나요?

■ 계약서에 법정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였나요?

- 위탁일, 위탁업무 내역, 납품 등 시기 및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기일
- 사급자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위탁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계약서, 발주서 등에 양 당사자의 날인이 모두 완료되었나요?

■ 계약서, 발주서, 검사확인서 등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있나요?

■ 기존 위탁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계약 체결 절차를 거친 뒤에 업무를 지시하고 있나요?

■ 최초 공사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추가 비용, 법률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협력사에 전가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나요??

■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협력업체에 책임을 묻는 조항(예: 일체의 비용, 전적인 책임)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나요?

■ 기존 계약 대비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협력업체별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공제한 뒤 거래대금을 결정한 적이 없나요?

■ 거래 물량을 과장하여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단가를 낮춘 적이 없나요?

■ 경쟁입찰을 거쳤음에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적이 없나요?

■ 계약상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을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결정하고 있나요?

■ 하도급대금을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혹은 계약상 하도급대금 지급시점보다 늦게 지급한 사실이 없나요?

■ 하도급대금을 어음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어음의 만기가 약속된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 이전인가요?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을 시, 하도급업체에게 비율을 준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시, 하도급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비율을 준수하여 대금을 증액하고 있나요?

■ 협력업체가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였나요?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나요(회의 개최 일정 확보,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담당자의 협의 참여 등)

4.2 실무가이드

■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함에 유의한다.

■ 다음의 경우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에 유의한다

-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을 하기로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조정주기를 길게 설정하는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수급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정하는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는데 그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기준지표가 불합리하여 사실상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탈법적 행위로 연동제의 취지가 반영될 수 없는 연동계약이 체결된 경우

■ 연동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 형식적 계약 : 계약서상 조정 기준 명기 없이 '추후 협의'로 처리
- 이중계약 : 서면 계약과 다른 단가로 정산 진행
- 일방적 기준설정 : 수급사업자의 가격 반영 요구 무시

■ 미연동합의시 기준과 절차

- 합리적 사유'는 객관적 자료로 소명 필요
- 별도 합의서 또는 계약서 내 명확한 조항 필수
- 서면 미비, 소명 불충분 시 공정위 제재 가능성

■ 미연동 합의 관련 유의사항

-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미연동합의'의 경우에도 표준계약서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 기회를 부여한 뒤 그 결과를 서면으로 명확히 보관해야 함
- 형식적 합의로 판단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기술자료에 대해 공정위 실무는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기술자료의 범위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선금금 관련 유의사항

- 원사업자와 선금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 사이에 선금금을 기성금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원사업자의 선금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하도급법의 입법목적 및 하도급법 제6조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의 선금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